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. 5. 30 선고 2023가단350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4. 4. 18.

판 결 선 고 2024. 5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이천시 E 전 45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지상 연와조 농어가 주택 50.3㎡ 및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지상 시멘트벽돌조 농어가 주택 창고 39.62㎡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 소유의 이천시 E 전 456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) 위에 피고가 주문 1항 기재 주택 및 창고를(이하 ‘이 사건 각 건물’)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~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유현영

[별지]

도면



